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박민규의원 대표발의)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 중 “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”을 삭제함(현행 제36조제2호 삭제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동 찬)